

기안용지

문류기호 부서번호	도행 1436-	(전화번호 12-944)	인경구 경원 경사 상
처리기관	보건행정과장		
시행일자			
보통번호			
보고기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결재 1975. 4. 6 관공서장 </div>		
기안책임자	이종근		

경수	유신	수신처참조	발신	시장	분	종
제목	전병제조 판매업소에 대한 집외 회시					
당시와 보사부간에 아미와 같은 집외회시가 있었음을 통보하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도록 함것						

집외 요 지	회 시 요 지	
1) 송심전병 제조 판매업소가 과자류 제조업 품목중 건과류에 속하는 과자류 제조업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지 여부	1) 송심전병의 원료, 성분 조합 및 제조방법등으로 보아 건과류에 속한다고 판단되며 이를 제조하	정시
2) 동업소가 송심전병을 직석에서 제조 판매하고 있어 다과점, 다과점영업(웨이판매 업소)업종에 속하는 지 여부	어도, 판매하는 경우는 식품 위생업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과자류 제조업에 속하나	판인
3) 위 1,2항에 업종에 속하지 아니한다 면 기본적으로 영세업자가 송심전병을 직석에서 제조 판매되는 점으로 보아	2) 동 제품을 개식을 갖추고 제조 하여 직석에서 판매하는 경우 이는 식품 위생업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다과점영업에	발송
간이, 다과점 영업(웨이판매)업종에		

신설하이 무허가 승시처리제조판매

속함.

업소들 주림수있는 상안을 강구

하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주) : 다사(주) : 한(주)

식품 1436 - 455 (70 - 3700) 1975. 4. 1.

수신 서울특별시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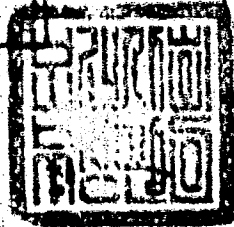
제목 전방반메업소에 대한 질의회신

1. 보행 1436 - 445호 (75.3. 14)와 관련입니다.

2. 가. 송신평면의 원료, 성분배합 및 제조방법등으로 보아
건과류에 속한다고 판단되며, 이불 제조학이도 산매하는 경우는
식품위생법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과자류제조업에 속하나,

나. 동 제품을 껍석을 갖추고 제조하여, 즉석에서 판매
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다과
점영업에 속함. 끝.

분 사 처 리 인	일시	1975. 4. 2	선 결 유 형	상 관 청 455
	집 유 번호	517	과 장 수	



상부 공한시 규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생 국 장 서 정 헌 전 결

기안용지

분류기호	보행 1236	(전화번호 72.2637)	권장규정	(조/항)
문서번호	44		보건의사회국장	
처리기간	75. 3.			
시행일자	75. 3			
보존년한	1			

오승환

3

보조기관	보건행정과장						
	위생계장						
기안책임자	장우승	75. 3. 13					

경수찰	유심조	보건사회부장관	발신			
		위생국장	신			

제목 ~~승실전병(복합) 제조 판매업소~~ 제조 판매업소에 대한 결의
 1. 매년 계절적으로 11월부터 4월 까지 관내 산재하고 있는 무허가 '승실전병, 제조 판매업소'에 대한 업종이 관제 법규에 저촉된바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결의 하오니 조속히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승실전병 제조 판매업소가 과자류 제조업 등록증 건파 후에 속하리 과자류 제조업종으로 처리 하여야 되는지 여부

나) 동업소가 승실전병을 직역에서 제조 판매하고 있어 다과점 영업(예식 판매업소) 업종에 속 하는지 여부

다. 위 가. 나. 항의 업종에 속하지 아니 한다면 계절적으로 임시업자가 승실전병을 직역에서 제조 판매 되는 점으로 보아 간이 다과점 영업(예식 판매) 업종을 신설 하여 무허가 승실 전병 제조 판매업소를 ~~관제법규에 저촉하여 주기가 바랍니다~~ 즉 관제 법규에 저촉을 강구 하여 주시기. 비. 남. 나. 나. 나.

질의 요지	회신(법무과 협의) ()	법무과 협의 사항()	회신
<p>두부류 제조 허가를 를 통하여 영업중 75.1.7에 유업계를 제출하고 장소이전 을 목적으로 재개 업 신고후(75.1.8) 장소이전허가신청을 접하고 현지확인 하여 건축물 용도부 적으로 불허가 되었 으며 기존업소에 시 설물이 없으니 허가 취소 여부</p>	<p>시설이 있을 때 또한 제반 신고 사항이 이루어지 지 않았을 때 식품위생법제 25조 에 의거 허가취소 가능</p>	<p>장소변경허가 불허가안으로 영업허가 취소할수 없으며 기존허가된 시설물에 대한 여 법제 26조에 근거한 행 정명령 (시설개수명령) 을 내리고 그 명령을 위반 했을시 허가취소할수 있음</p> <p>단, 동법제 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존 허가사 에 특별한 부관을 부해놓 은 경우 (조건부 취소등) 는 법문으로 함</p>	<p>법무과 협의 사항에 따라 회신</p>